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167
----------	-----

2023. 6. 12.
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3. 6. 1. 노애자 의원 등 12명

나. 상정의결

- 제312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2023. 6. 12.)
“수정가결”

2. 제안이유(제안설명: 대표발의자 노애자 의원)

-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수행에 필요한 예산 지원 근거와 연구결과에 대한 환류 절차를 마련하여 연구단체 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보다 내실있는 연구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함.

3. 주요내용

가. 연구단체지원비 항목을 신설함(안 제2조제3호 신설)

나. 연구단체지원비 지원 근거 및 범위를 규정함(안 제8조제2항 신설)

다. 정책연구용역의 계약 방법은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함(안 제8조의2 신설)

라. 연구활동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연구단체 결과보고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4항 신설)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해당 없음
- 나. 예산조치: 논의 필요
- 다. 입법예고: 해당 없음

5.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구경남)

- 행정안전부 <의원정책개발비 관련 가이드라인> 지침에 따르면 의원이 속한 상임위원회를 초월하여 관심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의원연구단체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의원의 정책개발 및 입법 활동 활성화를 목적으로 구성·운영하고 있음.
- 다만, 지방의원의 입법 및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의원정책개발비를 신청할 수 있으며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연구용역 계약시 회의비 등으로 반영된 자문회의, 토론회 등의 소요경비는 의원정책개발비로 집행이 가능하나, 연구용역 원가계산서에 명시된 금액 일체를 연구용역 업체에 지급하여야 하고 회의비 등 경비는 연구용역 수행기관에서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¹⁾에서도 의원정책개발비는 정책연

1)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5. 의원정책개발비(205-09)

- ① 경비성격 : 지방의회의 정책개발을 위해 위촉받은 자의 조사, 연구 등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
- 정책연구용역비로 사용하되, 공청회나 세미나, 간담회 등은 의정운영공통경비로 편성
※ 해당 지방의회에 등록된 지방의원 연구단체에서 발주하는 경우 지원(의원 개인에게 지원 불가)
- ② 의회관련 경비 별도한도 내에서 자율 편성
※ 별도한도 추가 : (지방의원수 × 500만원)

구용역비로 사용하되, 공청회나 세미나, 간담회 등은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한편, 지방의회 관련 경비 중 총액한도제 운영 예산과목은 의정운영공통경비(205-05), 의회운영업무추진비(205-06), 의원국외여비(205-04),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 (205-08) 4개 통계목임.

○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정의)제3호에서는 “연구단체지원비” 를 신설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의 <예산편성운영기준>에 따른 예산과목 중 의정운영공통경비 일부를 연구단체에 일정비용을 지원하는 것임.
- 안 제7조(운영심의위원회의 기능)제4항의 규정은 운영심의위원회 기능 중 연구단체지원비 지급결정 및 회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
- 안 제8조(연구단체 지원 등)제2항의 규정은 연구단체에 의정운영공통경비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하는 비용은 자료수집비 및 여비, 간담회·토론회·세미나 개최 시의 회의비, 강사료, 자문경비 등 필요 경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임. 다만, 여비는 「지방자치법」 제40조²⁾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제4조³⁾에 이미 여비지급의 근거가 있는 바 예산과목 중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집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의원국내여비(205-03)로 집행하

2) 지방자치법

제40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 지방의회의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3. 본회의 의결, 위원회 의결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3)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제4조(여비 지급) ① 의원이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 나 의회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여비는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구분하고, 그 지급기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다.

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아울러 의정운영공통경비 지원의 범위(10퍼센트 범위)가 적절한지는 첨부된 <연구단체 관련 서울시 기초의회 조례 현황>⁴⁾ 자료를 참고하여 의회 예산사정, 다른 의회 지원기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고 <예시>⁵⁾와 같이 조문을 정리할 필요는 있다고 보여짐. 제3항에서는 연구단체지원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제4항에서는 규정을 위반하거나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원정책개발비와 연구단체지원비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된 예산을 회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예산을 지급중지 또는 회수하여야 하는 이행주체가 불분명한 바 ‘의장’으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 안 제8조의2(정책연구용역의 계약)에서는 연구단체가 발주하는 용역이 현재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개선하고자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함을 규정한 것으로 보임. 다만, 조문 중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할 경우’ 보다는 일정한 제약조건이 부합한 경우에만 해당함으로 ‘수의계약 대상인 경우’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 안 제10조(연구활동 보고서 등의 제출)제1항에서는 연구활동 보고서를 연구활동 종료 후 기존 ‘10일 이내’를 ‘30일 이내’로 기간을 연장하여 내실있는 보고서 작성이 되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임. 제2항에서는 투명한 예산집행을 담보하기 위해 사용내역을 첨부하도록 하고 제4항에서는 연 1회 이상 연구활동 결과보고회를 개최한 후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규정한 것은 연구성과물을 주민은 물론 의원 상호간 공유하여 연구단체의 내실있는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로 이

4) [별도 첨부]

5) <예시>

2. 연구활동에 수반되는 간담회·토론회·세미나 개최시의 회의비, 강사료, 전문가 자문경비 등

해됨.

- 안 제11조(연구단체의 등록취소)제3호에서는 연구단체지원비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조문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보임.
- 안 별지 제6호서식 중 ‘붙임 1.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1부’를 붙임자료로 명시하고 있으나 본칙 조문에 관련 규정이 없는 바 삭제하거나 본칙 조문에 관련 사항을 명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의원연구단체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의정활동을 활성화하고자 연구단체지원비 지원근거와 지원범위 규정을 신설하고 연구활동 보고서의 내실있는 작성을 담보하고자 일반입찰, 의회 홈페이지 게시, 연구단체 결과보고회를 개최하려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다만, 의정운영공통경비 중 연구단체지원 비율 한도의 적정성 및 연구단체 지원비 지원시기⁶⁾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해 보이고 일부 조문에 대해서는 수정 및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6.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7. 토론 요지 : “생략”

8. 심사 결과 : “수정가결”

6) 현재 연구단체지원비가 별도로 편성되어 있지 않으므로 내년부터 지원할 경우에는 부칙에 적용례를 두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예시> 부 칙

제2조(연구단체지원비의 적용례) 제8조·제8조의2·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연구활동계획서를 신청한 자부터 적용한다.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사항 : “없음”

- 붙임 1.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에 대한 수정안
2.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끝.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관련의안번호
제167호

제안일자: 2023. 6. 12.

제안자: 운영위원장

1. 수정이유

- 연구단체지원비의 정의 및 지원범위를 명확히 하고 일부 조문을 개정취지에 부합하게 수정하여 미흡한 용어와 조문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수정주요내용

- 연구단체지원비의 정의규정을 수정함(안 제2조제3호)
- 연구단체지원비의 지원 범위를 수정함(안 제8조제2항)
- 예산의 지급중지 또는 회수 이행주체를 명시함(안 제8조제4항)
- 정책연구용역의 계약규정 일부 조문을 정비함(안 제8조의2)
- 연구단체지원비의 지원시기를 부칙에 규정함(안 부칙 제2조)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정의) 제3호 중 “연구단체”를 “의원연구단체”로 수정한다.

안 제8조(연구단체 지원 등) 제2항제1호 중 “자료수집비 및 여비”를 “자료수집비”로 수정하고, 같은조 제2항제2호 중 “세미나 회의비”을 “세미나 개최시의 회의비”로 하고 “자문경비 등 기타필요 경비”를 “자문경비 등”으로 한다. 같은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연구단체”를 “의장은 연구단체”로 한다.

안 제8조의2(정책연구용역의 계약) 중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할 경우”를 “수의계약 대상인 경우”로 한다.

안 부칙을 부칙 제1조로 하고 같은 조의 제목으로 “(시행일)”을 삽입하며,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연구단체지원비의 적용례) 제8조·제8조의2·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연구활동계획서를 신청한 자부터 적용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2. (생략)</p> <p><u><신설></u></p>	<p>제2조(정의) ----- ----- -----.</p> <p>1.·2. (현행과 같음)</p> <p>3. <u>“연구단체지원비”란 연구단체가 입법 및 정책개발 등 연구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로써 의정 운영공동경비에서 지원되는 일정비용을 말한다.</u></p>	<p>제2조(정의) ----- ----- -----.</p> <p>1.·2. (현행과 같음)</p> <p>3. ----- <u>의원연구단체</u>----- ----- ----- ----- ----- -----.</p>
<p>제7조(운영심의위원회의 기능) ① 운영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p>1. ~ 3. (생략)</p> <p><u><신설></u></p> <p>4.·5. (생략)</p> <p>② (생략)</p>	<p>제7조(운영심의위원회의 기능) ①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연구단체지원비 지급결정 및 회수에 관한 사항</u></p> <p>5.·6. (현행 제4호 및 제5호와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제7조(운영심의위원회의 기능) ①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개정안과 같음)</p> <p>5.·6. (현행 제4호 및 제5호와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제8조(연구단체 지원 등)</p>	<p>제8조(연구단체 지원 등)</p>	<p>제8조(연구단체 지원 등)</p>

① (생략)

<신설>

②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받은 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활동계획 외에 다른 목적으로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

③ 연구단체가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연구활동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원정책개발비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된 예산을 회수할 수

① (현행과 같음)

② 의장은 연구단체에 대하여 의정운영공통 경비의 10퍼센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연구단체지원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연구활동에 따른 자료수집비 및 여비
2. 연구활동에 수반되는 간담회·토론회·세미나 회의비, 강사료, 전문가 자문경비 등 기타필요 경비

③ 의원정책개발비와 연구단체지원비-----

④ 연구단체- 제3항- 의원정책개발비와 연구단체지원비----- 회수하여야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자료수집비
2. -----

세미나 개최시의 회의비 -----
--- 자문경비 등

③ (개정안과 같음)

④ 의장은 연구단체-

있다.

④ (생략)

<신설>

제10조(연구활동 보고서 등의 제출) ①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 받은 연구단체는 연구활동 종료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연구활동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한다.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제8조의2(정책연구용역의 계약) 정책연구용역의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할 경우 연구단체는 수의계약 사유서와 용역 수행기관의 연구실적을 운영심의위원회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연구활동 보고서 등의 제출) ① -----

----- 30일 -----

-----.

② 연구활동 보고서에

-----.

⑤ (개정안과 같음)

제8조의2(정책연구용역의 계약)-----

----- 수의계약 대상인 경우 -----

-----.

제10조(연구활동 보고서 등의 제출) ① (개정안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② (생략)

<신설>

제11조(연구단체의 등록 취소) 의장은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 1. 2. (생략)
- 3. 승인된 연구활동계획 이외의 목적으로 의원정책개발비를 사용한 경우

의원정책개발비 및 연구단체지원비 사용 내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④ 의장은 연구단체 활동의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연구활동 결과보고회를 개최한 후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1조(연구단체의 등록 취소) -----

- 1. 2. (현행과 같음)
- 3. -----

의원정책개발비와 연구단체지원비-----

③ (개정안과 같음)

④ (개정안과 같음)

제11조(연구단체의 등록 취소) -----

- 1. 2. (현행과 같음)
- 3. (개정안과 같음)

부 칙	부 칙
<p><u>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u></p>	<p><u>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u></p> <p><u>제2조(연구단체지원비의 적용례) 제8조·제8조의 2·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연구활동계획서를 신청한 자부터 적용한다.</u></p>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연구단체지원비”란 의원연구단체가 입법 및 정책개발 등 연구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로써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지원되는 일정비용을 말한다.

제7조제1항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연구단체지원비 지급결정 및 회수에 관한 사항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중 “의원정책개발비”를 “의원정책개발비와 연구단체지원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중 “연구단체”를 “의장은 연구단체”로, “제2항”을 “제3항”으로, “의원정책개발비”를 “의원정책개발비와 연구단체지원비”로, “회수할 수 있다”를 “회수하여야 한다”로 한다.

- ② 의장은 연구단체에 대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의 10퍼센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연구단체지원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연구활동에 따른 자료수집비

2. 연구활동에 수반되는 간담회·토론회·세미나 개최시의 회의비, 강사료, 전문가 자문경비 등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정책연구용역의 계약) 정책연구용역의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수의계약 대상인 경우 연구단체는 수의계약 사유서와 용역 수행기관의 연구실적을 운영심의위원회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제1항 중 “10일”을 “30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연구활동 보고서에는 의원정책개발비 및 연구단체지원비 사용내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연구단체 활동의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연구활동 결과 보고회를 개최한 후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1조제3호 중 “의원정책개발비”를 “의원정책개발비와 연구단체지원비”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단체지원비의 적용례) 제8조·제8조의2·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연구활동계획서를 신청한 자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6호서식]

연구활동 보고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단 체 명		
연 구 내 용	연구주제	
	연구목적	
	연구결과	(별 첨)
정 책 개 발 비	수 령 액	금 원 (₩)
	집 행 액	금 원 (₩)
	잔 액	금 원 (₩)
연구단체 지원비	수 령 액	금 원 (₩)
	집 행 액	금 원 (₩)
	잔 액	금 원 (₩)
특 기 사 항	“집행관련 증빙자료 일체”	

- 붙 임 1.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1부
2. 정책개발비 및 연구단체지원비 사용내역서 각 1부
3. 기타 필요한 사항

년 월 일

신 청 인 대 표 자 : (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장 귀하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2. (생 략)</p> <p><u><신 설></u></p>	<p>제2조(정의) ----- -----.</p> <p>1.·2. (현행과 같음)</p> <p>3. <u>“연구단체지원비”란 의원연구단체가 입법 및 정책개발 등 연구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로써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지원되는 일정비용을 말한다.</u></p>
<p>제7조(운영심의위원회의 기능) ① 운영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p>1. ~ 3. (생 략)</p> <p><u><신 설></u></p> <p>4.·5. (생 략)</p> <p>② (생 략)</p>	<p>제7조(운영심의위원회의 기능) ①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연구단체지원비 지급결정 및 회수에 관한 사항</u></p> <p>5.·6. (현행 제4호 및 제5호와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제8조(연구단체 지원 등) ① (생 략)</p> <p><u><신 설></u></p>	<p>제8조(연구단체 지원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u>의장은 연구단체에 대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의 10퍼센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연구단체지원비를 지원할 수 있다.</u></p>

②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받은 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활동계획 외에 다른 목적으로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

③ 연구단체-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연구활동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원정책개발비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된 예산을 회수할 수 있다.

④ (생략)

<신설>

제10조(연구활동 보고서 등의 제

1. 연구활동에 따른 자료수집비

2. 연구활동에 수반되는 간담회·토론회·세미나 개최시의 회의비, 강사료, 전문가 자문 경비 등

③ 의원정책개발비와 연구단체 지원비-----
-----.

④ 의장은 연구단체- 제3항---
----- 의원정책개발비와 연구단체지원비---
----- 회수하여야 한다.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제8조의2(정책연구용역의 계약)
정책연구용역의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수의계약 대상인 경우 연구단체는 수의계약 사유서와 용역 수행기관의 연구실적을 운영심의위원회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연구활동 보고서 등의 제

출) ①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 받은 연구단체는 연구활동 종료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연구활동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② (생 략)

<신 설>

제11조(연구단체의 등록취소) 의장은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2. (생 략)

3. 승인된 연구활동계획 이외의 목적으로 의원정책개발비를 사용한 경우

출) ① -----

-- 30일 -----

② 연구활동 보고서에는 의원정책개발비 및 연구단체지원비 사용내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④ 의장은 연구단체 활동의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연구활동 결과보고회를 개최한 후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1조(연구단체의 등록취소) --

1. 2. (현행과 같음)

3. -----

----- 의원정책개발비와 연구단체지원비-----

신·구별지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별지 제2호서식]</p> <p style="text-align: center;">연구활동계획서</p> <p>「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계획서를 제출합니다.</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20%;">연구단체명</td> <td colspan="2"></td> </tr> <tr> <td rowspan="2">연구내용</td> <td style="width: 10%;">주제</td> <td></td> </tr> <tr> <td>목적</td> <td></td> </tr> <tr> <td>연구활동기간</td> <td colspan="2">년 월 일 ~ 년 월 일</td> </tr> <tr> <td>연구방법 및 세부연구 계획</td>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별 첨)</td> </tr> <tr> <td rowspan="2">정책 개발비</td> <td>총액</td> <td>금 원 (₩)</td> </tr> <tr> <td>산출내역</td> <td>※ 세부내역 별첨</td> </tr> <tr> <td>기 타</td> <td colspan="2"></td> </tr> </table>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 신 청 인 대 표 : (인)</p>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장 귀하</p>	연구단체명			연구내용	주제		목적		연구활동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연구방법 및 세부연구 계획	(별 첨)		정책 개발비	총액	금 원 (₩)	산출내역	※ 세부내역 별첨	기 타			<p>[별지 제2호서식]</p> <p style="text-align: center;">연구활동계획서</p> <p>「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계획서를 제출합니다.</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20%;">연구단체명</td> <td colspan="2"></td> </tr> <tr> <td rowspan="2">연구내용</td> <td style="width: 10%;">주제</td> <td></td> </tr> <tr> <td>목적</td> <td></td> </tr> <tr> <td>연구활동기간</td> <td colspan="2">년 월 일 ~ 년 월 일</td> </tr> <tr> <td>연구방법 및 세부연구 계획</td>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별 첨)</td> </tr> <tr> <td rowspan="4">소요 예산</td> <td>총액</td> <td>금 원 (₩)</td> </tr> <tr> <td>정책 개발비</td> <td>금 원 (₩)</td> </tr> <tr> <td>연구단체 지원비</td> <td>금 원 (₩)</td> </tr> <tr> <td>산출내역</td> <td>※ 세부내역 별첨</td> </tr> <tr> <td>기 타</td> <td colspan="2"></td> </tr> </table>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 신 청 인 대 표 자 : (인)</p>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장 귀하</p>	연구단체명			연구내용	주제		목적		연구활동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연구방법 및 세부연구 계획	(별 첨)		소요 예산	총액	금 원 (₩)	정책 개발비	금 원 (₩)	연구단체 지원비	금 원 (₩)	산출내역	※ 세부내역 별첨	기 타		
연구단체명																																																	
연구내용	주제																																																
	목적																																																
연구활동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연구방법 및 세부연구 계획	(별 첨)																																																
정책 개발비	총액	금 원 (₩)																																															
	산출내역	※ 세부내역 별첨																																															
기 타																																																	
연구단체명																																																	
연구내용	주제																																																
	목적																																																
연구활동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연구방법 및 세부연구 계획	(별 첨)																																																
소요 예산	총액	금 원 (₩)																																															
	정책 개발비	금 원 (₩)																																															
	연구단체 지원비	금 원 (₩)																																															
	산출내역	※ 세부내역 별첨																																															
기 타																																																	
<p>[별지 제5호서식]</p> <p style="text-align: center;">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p> <p>「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연구활동계획 변경을 신청합니다.</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20%;">연구단체명</td> <td colspan="2"></td> </tr> <tr> <td rowspan="2">연구활동 계획 변경내용</td> <td style="width: 10%;">변경 전</td> <td></td> </tr> <tr> <td>변경 후</td> <td></td> </tr> <tr> <td>연구활동계획 변경사유</td> <td colspan="2"></td> </tr> <tr> <td>연구방법 및 세부연구계획</td>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별 첨)</td> </tr> <tr> <td rowspan="2">정책 개발비</td> <td>총액</td> <td>금 원 (₩)</td> </tr> <tr> <td>산출내역</td> <td>※ 세부내역 별첨</td> </tr> <tr> <td>특 기 사 항</td> <td colspan="2"></td> </tr> </table>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 신 청 인 대 표 : (인)</p>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장 귀하</p>	연구단체명			연구활동 계획 변경내용	변경 전		변경 후		연구활동계획 변경사유			연구방법 및 세부연구계획	(별 첨)		정책 개발비	총액	금 원 (₩)	산출내역	※ 세부내역 별첨	특 기 사 항			<p>[별지 제5호서식]</p> <p style="text-align: center;">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p> <p>「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연구활동계획 변경을 신청합니다.</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20%;">연구단체명</td> <td colspan="2"></td> </tr> <tr> <td rowspan="2">연구활동 계획 변경내용</td> <td style="width: 10%;">변경 전</td> <td></td> </tr> <tr> <td>변경 후</td> <td></td> </tr> <tr> <td>연구활동계획 변경사유</td> <td colspan="2"></td> </tr> <tr> <td>연구방법 및 세부연구계획</td>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별 첨)</td> </tr> <tr> <td rowspan="4">소요 예산</td> <td>총액</td> <td>금 원 (₩)</td> </tr> <tr> <td>정책개발비</td> <td>금 원 (₩)</td> </tr> <tr> <td>연구단체지원비</td> <td>금 원 (₩)</td> </tr> <tr> <td>산출내역</td> <td>※ 세부내역 별첨</td> </tr> <tr> <td>특 기 사 항</td> <td colspan="2"></td> </tr> </table>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 신 청 인 대 표 자 : (인)</p>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장 귀하</p>	연구단체명			연구활동 계획 변경내용	변경 전		변경 후		연구활동계획 변경사유			연구방법 및 세부연구계획	(별 첨)		소요 예산	총액	금 원 (₩)	정책개발비	금 원 (₩)	연구단체지원비	금 원 (₩)	산출내역	※ 세부내역 별첨	특 기 사 항		
연구단체명																																																	
연구활동 계획 변경내용	변경 전																																																
	변경 후																																																
연구활동계획 변경사유																																																	
연구방법 및 세부연구계획	(별 첨)																																																
정책 개발비	총액	금 원 (₩)																																															
	산출내역	※ 세부내역 별첨																																															
특 기 사 항																																																	
연구단체명																																																	
연구활동 계획 변경내용	변경 전																																																
	변경 후																																																
연구활동계획 변경사유																																																	
연구방법 및 세부연구계획	(별 첨)																																																
소요 예산	총액	금 원 (₩)																																															
	정책개발비	금 원 (₩)																																															
	연구단체지원비	금 원 (₩)																																															
	산출내역	※ 세부내역 별첨																																															
특 기 사 항																																																	
<p>[별지 제6호서식]</p>	<p>[별지 제6호서식]</p>																																																

연구활동 보고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단 체 명		
연 구 내 용	연구주제	
	연구목적	
	연구결과	(별 첨)
정 책 개 발 비	수령액	금 원 (₩)
	집행액	금 원 (₩)
	잔액	금 원 (₩)
특 기 사 항		“집행관련 증빙자료 일체”

- 붙임 1.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1부
 2. 연구활동비 및 정책개발비 사용내역서 1부
 3. 기타 필요한 사항

년 월 일
 신청인 대표 : (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장 귀하

연구활동 보고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단 체 명		
연 구 내 용	연구주제	
	연구목적	
	연구결과	(별 첨)
정 책 개 발 비	수령액	금 원 (₩)
	집행액	금 원 (₩)
	잔액	금 원 (₩)
연구단체 지원비	수령액	금 원 (₩)
	집행액	금 원 (₩)
	잔액	금 원 (₩)
특 기 사 항		“집행관련 증빙자료 일체”

- 붙임 1.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1부
 2. 정책개발비 및 연구단체지원비 사용내역서 1부
 3. 기타 필요한 사항

년 월 일
 신청인 대표자 : (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장 귀하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애자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7
----------	-----

발의연월일: 2023. 6. 1.

발 의 자: 노애자·이호귀·이향숙·
안지연·강을석·김형곤·
이동호·복진경·김진경·
우종혁·이도희·김현정
(이상12인)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수행에 필요한 예산 지원 근거와 연구결과에 대한 환류 절차를 마련하여 연구단체 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보다 내실있는 연구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연구단체지원비 항목을 신설함(안 제2조제3호 신설)

나. 연구단체지원비 지원 근거 및 범위를 규정함(안 제8조제2항 신설)

다. 정책연구용역의 계약 방법은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함(안 제8조의2 신설)

라. 연구활동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연구단체 결과보고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4항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 없음

나. 예산조치 : 논의 필요

다. 입법예고 : 해당 없음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연구단체지원비”란 연구단체가 입법 및 정책개발 등 연구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로써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지원되는 일정 비용을 말한다.

제7조제1항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연구단체지원비 지급결정 및 회수에 관한 사항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중 “의원정책개발비”를 “의원정책개발비와 연구단체지원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의원정책개발비”를 “의원정책개발비와 연구단체지원비”로, “회수할 수 있다”를 “회수하여야 한다”로 한다.

- ② 의장은 연구단체에 대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의 10퍼센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연구단체지원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연구활동에 따른 자료수집비 및 여비
2. 연구활동에 수반되는 간담회·토론회·세미나 회의비, 강사료, 전문가 자문경비 등 기타필요 경비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정책연구용역의 계약) 정책연구용역의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할 경우 연구단체는 수의계약 사유서와 용역수행기관의 연구실적을 운영심의위원회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제1항 중 “10일”을 “30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연구활동 보고서에는 의원정책개발비 및 연구단체지원비 사용내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④ 의장은 연구단체 활동의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연구활동 결과보고회를 개최한 후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1조제3호 중 “의원정책개발비”를 “의원정책개발비와 연구단체지원비”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6호서식]

연구활동 보고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단 체 명		
연 구 내 용	연구주제	
	연구목적	
	연구결과	(별 첨)
정 책 개 발 비	수 령 액	금 원 (₩)
	집 행 액	금 원 (₩)
	잔 액	금 원 (₩)
연구단체 지원비	수 령 액	금 원 (₩)
	집 행 액	금 원 (₩)
	잔 액	금 원 (₩)
특 기 사 항	“집행관련 증빙자료 일체”	

- 붙 임 1.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1부
2. 정책개발비 및 연구단체지원비 사용내역서 각 1부
3. 기타 필요한 사항

년 월 일

신 청 인 대 표 : (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장 귀하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2. (생략)</p> <p><u><신설></u></p>	<p>제2조(정의) ----- -----.</p> <p>1. 2. (현행과 같음)</p> <p>3. <u>“연구단체지원비”란 연구단체가 입법 및 정책개발 등 연구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로써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지원되는 일정비용을 말한다.</u></p>
<p>제7조(운영심의위원회의 기능) ① 운영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p>1. ~ 3. (생략)</p> <p><u><신설></u></p> <p>4. 5. (생략)</p> <p>② (생략)</p>	<p>제7조(운영심의위원회의 기능) ①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연구단체지원비 지급결정 및 회수에 관한 사항</u></p> <p>5. 6. (현행 제4호 및 제5호와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제8조(연구단체 지원 등) ① (생략)</p> <p><u><신설></u></p>	<p>제8조(연구단체 지원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u>의장은 연구단체에 대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의 10퍼센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연구단체지원비를 지원할 수 있다.</u></p>

②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받은 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활동계획 외에 다른 목적으로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

③ 연구단체가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연구활동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원정책개발비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된 예산을 회수할 수 있다.

④ (생략)

<신설>

1. 연구활동에 따른 자료수집비 및 여비

2. 연구활동에 수반되는 간담회·토론회·세미나 회의비, 강사료, 전문가 자문경비 등 기타필요 경비

③ 의원정책개발비와 연구단체 지원비-----

-----.

④ ----- 제3항-----

----- 의원정책개발비와 연구단체지원비---

----- 회수하여야 한다.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제8조의2(정책연구용역의 계약)

정책연구용역의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할 경우 연구단체는 수의계약 사유서와 용역 수행기관의 연구실적을 운영심의위원회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

제10조(연구활동 보고서 등의 제출) ①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 받은 연구단체는 연구활동 종료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연구활동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② (생략)

<신 설>

제11조(연구단체의 등록취소) 의장은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2. (생략)

3. 승인된 연구활동계획 이외의 목적으로 의원정책개발비를

야 한다.

제10조(연구활동 보고서 등의 제출) ① -----

-- 30일 -----

--.

② 연구활동 보고서에는 의원정책개발비 및 연구단체지원비 사용내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④ 의장은 연구단체 활동의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연구활동 결과보고회를 개최한 후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1조(연구단체의 등록취소) --

-----.

1. 2. (현행과 같음)

3. -----
----- 의원정책개발비와 연

사용한 경우	구단체지원비----- -----
--------	----------------------

신 · 구별지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별지 제2호서식] 연구활동계획서</p> <p>「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계획서를 제출합니다.</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20%;">연구단체명</td> <td colspan="2"></td> </tr> <tr> <td rowspan="2">연구내용</td> <td style="width: 10%;">주제</td> <td></td> </tr> <tr> <td>목적</td> <td></td> </tr> <tr> <td>연구활동기간</td> <td colspan="2">년 월 일 ~ 년 월 일</td> </tr> <tr> <td>연구방법 및 세부연구 계획</td>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별 첨)</td> </tr> <tr> <td rowspan="2">정책 개발비</td> <td>총액</td> <td>금 원 (₩)</td> </tr> <tr> <td>산출 내역</td> <td>※ 세부내역 별첨</td> </tr> <tr> <td>기 타</td> <td colspan="2"></td> </tr> </table>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 신 청 인 대 표 : (인)</p> <p>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장 귀하</p>	연구단체명			연구내용	주제		목적		연구활동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연구방법 및 세부연구 계획	(별 첨)		정책 개발비	총액	금 원 (₩)	산출 내역	※ 세부내역 별첨	기 타			<p>[별지 제2호서식] 연구활동계획서</p> <p>「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계획서를 제출합니다.</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20%;">연구단체명</td> <td colspan="2"></td> </tr> <tr> <td rowspan="2">연구내용</td> <td style="width: 10%;">주제</td> <td></td> </tr> <tr> <td>목적</td> <td></td> </tr> <tr> <td>연구활동기간</td> <td colspan="2">년 월 일 ~ 년 월 일</td> </tr> <tr> <td>연구방법 및 세부연구 계획</td>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별 첨)</td> </tr> <tr> <td rowspan="4">소요 예산</td> <td>총 액</td> <td>금 원 (₩)</td> </tr> <tr> <td>정책 개발비</td> <td>금 원 (₩)</td> </tr> <tr> <td>연구단체 지원비</td> <td>금 원 (₩)</td> </tr> <tr> <td>산출 내역</td> <td>※ 세부내역 별첨</td> </tr> <tr> <td>기 타</td> <td colspan="2"></td> </tr> </table>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 신 청 인 대 표 : (인)</p> <p>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장 귀하</p>	연구단체명			연구내용	주제		목적		연구활동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연구방법 및 세부연구 계획	(별 첨)		소요 예산	총 액	금 원 (₩)	정책 개발비	금 원 (₩)	연구단체 지원비	금 원 (₩)	산출 내역	※ 세부내역 별첨	기 타		
연구단체명																																																	
연구내용	주제																																																
	목적																																																
연구활동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연구방법 및 세부연구 계획	(별 첨)																																																
정책 개발비	총액	금 원 (₩)																																															
	산출 내역	※ 세부내역 별첨																																															
기 타																																																	
연구단체명																																																	
연구내용	주제																																																
	목적																																																
연구활동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연구방법 및 세부연구 계획	(별 첨)																																																
소요 예산	총 액	금 원 (₩)																																															
	정책 개발비	금 원 (₩)																																															
	연구단체 지원비	금 원 (₩)																																															
	산출 내역	※ 세부내역 별첨																																															
기 타																																																	
<p>[별지 제5호서식]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p> <p>「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연구활동계획 변경을 신청합니다.</p>	<p>[별지 제5호서식]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p> <p>「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연구활동계획 변경을 신청합니다.</p>																																																

